

不 動 産 賣 買 契 約 書

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.

1. 부동산의 표시 **서울 강남구 개포동 715 주공아파트 2차 203동 202호 49.72 ㎡**
2. 계약내용 **소유권이전**

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을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賣買代金	金 四億參阡萬圓(₩430,000,000-) 整	單價	
契約金	金 (없음) 원 整은 계약시 지불하고		
中渡金	金 參阡萬(30,000,000)원整은 2015년 12월 10일 카불하따 자 대여금과 상계하고		
殘 金	金 四億(400,000,000)원整은 2017년 9월 15일 지불한다.		

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하며, 또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.

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,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,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.

제5조 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인도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와 공용수용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담이 과하여졌을 경우 그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.

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)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7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.

특약사항 : 잔금 사액(400,000,000)원의 지급은 국민은행 근저당채무 일억삼천만(130,000,000)원, 하나은행 근저당채무 오천만(50,000,000)원, 임대보증금 채무 일억(100,000,000)원,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채무 이천만(20,000,000)원, 최상수 근저당채무 일억(100,000,000)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, 날인한다.

2017년 8월 31일

매도인	주 소	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3, 2동 206호(여의도동, 장미아파트)			성명	김수경 
	주민등록번호	500125-2047235	전화			
매수인	주 소	서울 강남구 언주로 21, 117동 402호(개포동, 주공아파트)			성명	박수용 
	주민등록번호	730108-1025429	전화			